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1호	500	700	1,000
나.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2호	300	500	700
다. 법 제23조의3제4항·제6항·제7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2호의2	500	700	1,000
라.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3호	100	200	500